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법」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사항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2023년 12월 31일 -----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III. 시행일

- 2023년 11월 1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I Contact



김승욱 관세사

T 02-6011-3046
E sokim@esein.co.kr



정승은 관세사

T 070-4353-5150
E sejeo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